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(홍기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226

발의연월일: 2024. 7. 25.

발 의 자:홍기원·한민수·윤후덕

박 정・김태년・조인철

이기헌 • 민병덕 • 이연희

윤종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물,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그 기준을 적용한 건축물 등으로 주거침입과 같은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으나, 반복되는 호우로 인한 침수,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에는 방범창 등 범 죄예방 시설이 오히려 구조 및 탈출을 곤란하게 하여 인명피해가 발 생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건축물,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때에는 화재, 침수 등 재난 발생 시 피난, 피해 경감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등의 안전 및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임(안 제53조

의2제1항후단 신설).

법률 제 호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3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범죄예방 기준은 화재, 침수 등 재난 발생 시 피난, 피해경감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3조의2(건축물의 범죄예방) ①	제53조의2(건축물의 범죄예방) ①
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	
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	
하기 위하여 건축물, 건축설비	
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	
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	
<후단 신설>	이 경우 범죄예방 기준은 화재,
	침수 등 재난 발생 시 피난, 피
	해 경감 및 안전에 필요한 사
	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